

대구지방법원 2022. 6. 29 선고 2022가단10359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6. 29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지분에 관하여 2020. 3. 14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0. 7. 24. 접수 제287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 김범준

별지